

세계가 원하는 **인재**, 인재가 원하는 **교육**

2021 학년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재입학 및 전학 · 편입학 시행 규정 (2021.03.개정)



재입학 · 전학 · 및 편입학 시행 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와 경기도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2021-488호, 2021.2.)에 의거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2조(방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1항에 의거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국내 전학생인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

②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각종 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함)

③ 고등학교 계열 간의 전·편입학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허용한다.

④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한다.

⑤ 학교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및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지침」(별첨)에 의거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해당 지역 학교 및 대중교통 최단 거리(원적교 기준)로 8km 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전학 배정 학교 5개교를 지정하여 전학 배정요청서를 교육감에 요청한다.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배정 요청학교로 지정해야 함

1. 원적교 기준으로 대중교통(인터넷 지도 길찾기) 최단 거리 8km를 초과한 학교
2. 피해자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시군)외의 학교

※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유학, 자퇴, 거주지 이전에 따라 타시군(도)으로 전학 등을 하는 경우 강제 전학 조치 불가(해당 학생이 다시 해당교로 전학·재입학을 하는 경우 가해 학생을 강제전학 조치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가해 학생 전학 배정요청서 <서식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서식9>

⑦ 관내 고교에서의 전·편입학은 불허한다.

⑧ 기숙사 생활을 고려, 기숙사 수용 한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제3조(허용 기준) ① 본교 자퇴(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퇴(퇴학)당시 이하 학년으로 재입학을 허용한다. 단, 본교를 자퇴한 자 중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조기 진급·졸업·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거쳐 재입학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

②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출석일수 등)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정원 내 결원 시 지원 대상

1. 일반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및 제6호에 명시된 학교만 가능함)에서 본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중 경기도 내 거주자.(단, 관내 고교에서의 전·편입학은 불허)

2. 당해년도 신입학전형의 사회통합전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경기도 내 거주자.(단, 관내 고교에서의 전·편입학은 불허)

3.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서 본교로의 전·편입학은 1년 이상 수학한 경우 다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나)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학력 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다)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

④ 정원 외 결원 시 지원 대상

- 1. 편입학 :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친권자와 지원자)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수원시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정원 외 학생 수 인정 범위

<p>1) 재입학 : 대상자 전원</p> <p>2)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로서 전 가족(친권자와 지원자)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이내</p> <p>3) 영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자(귀국 학생 등) 및 전·편입학하는 자 (귀국 학생 중 수원시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자와 타 시도 및 경기도내 타 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학생수로 인정. 단,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어고는 동일계 고등학교에 한함)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국내 전학생인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재학생에 한하여 인정)</p> <p>4)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이내(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2), 3), 4)는 거주지가 수원시 관내 지역으로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정원 외 인정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함</p>
--

⑤ 귀국 학생 학력 및 학년 인정

- 1.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기 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 학년을 결정한다.(경기도교육청 고시 2021-488호, 2021.2.)
- 2.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외국 가을 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3.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여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같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로 공증을 받아와야 함

<p>(예시)</p> <p>▶ [예1]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9. 1~2020. 6. 20 (7,8월방학) : G9 수료 ▪ 2020. 9. 1~2021. 6. 20 : G10 수료 ▪ 2021. 9.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 <p>⇒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p> <p>▶ [예2]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9. 1~2020. 6. 20 : G8 수료 ▪ 2020. 9. 1~2021. 6. 20 : G9 수료 ▪ 2021. 9.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 <p>⇒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중복(G8)하여 9학년까지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보아 2학기에 편입학</p>

⑥ 특례 전·편입학 대상자 및 일반 귀국자

1.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2조제3항 및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 훈령)」에 따라 허용한다.

- ※ 제82조 제3항 해당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 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 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

2. 일반 귀국자는 외국에서 수학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

※ 귀국학생 전·편입학 (경기도교육청 고시 2021-488호)

1. 외국의 학교(외국 소재 한국학교 포함)를 재학·수료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 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용한다.(단, 외국 소재 한국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편입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훈령 제19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처리를 전입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평준화 지역 동일학군 내에서 귀국 학생은 원재적교에 전·편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 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기 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 학년을 정한다.
4.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외국 가을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⑦ 영어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학생은 본교 전·편입전형에 지원 할 수 없다.
- ⑧ 국내(고교)에서의 전·편입학 희망자 및 정원 외 전·편입 대상자는 결원 및 정원 외 인정 범위 내에서 전·편입 입학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1. 2단계 면접의 각 전형 요소 중 1개 이상에서 만점의 40% 이하 득점한 경우
2. 전형 총점의 60% 이하 득점한 경우

⑨ 학칙과 재·전·편입학 시행 규정에 따라 재·전·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되, 최종적으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전·편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① 전 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②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③ 전·편입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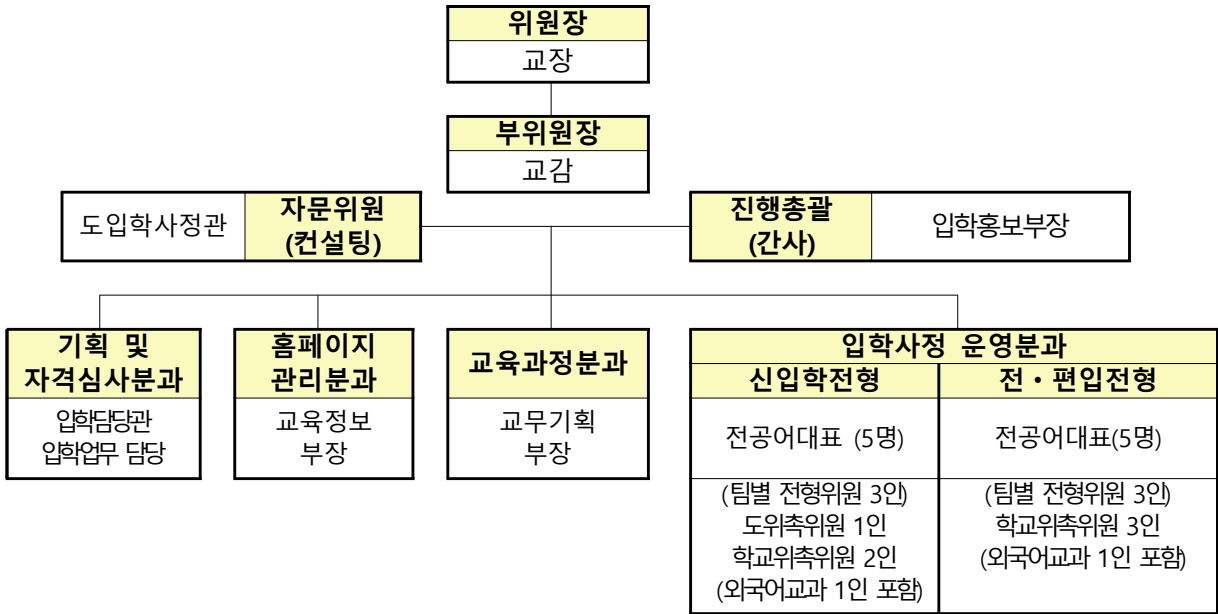
제5조(전·편입학 전형시기 등) ① 현원 및 결원 현황,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전·편입학 전형일을 정하고 전형일정 등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② 결원에 대한 전·편입학 대상자의 선정시기와 전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기도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 및 학교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③ 1학년 전·편입학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단계별 전형방법에 따라 대상 학생들의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끝난 이후로 시행한다. (단, 일반귀국학생 전·편입학의 경우 제외)

제6조(전·편입학 전형관리) ① 전·편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고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전·편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문위원(컨설팅), 진행 총괄(간사)을 두며, 기획 및 자격심사 분과, 홈페이지관리 분과, 교육과정 분과, 입학사정 운영 분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2. 전형위원(면접관)의 자격은 자기주도학습전형 연수(최근 3년 이내) 이수자에 한함.

※ 면접 실시조(팀)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편입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학교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국어 전형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제7조(전형절차 및 전형 방법) ①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 전·편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공고된 전·편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전·편입학 지원서와 제출 서류가 접수되면 학교는 수험표를 교부하고 민원인은 학교가 지정한 날에 전·편입학 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통합전형 이외의 모든 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하여 전형 요소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순으로 선발하며,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2단계 전형을 통해 모집정원 만큼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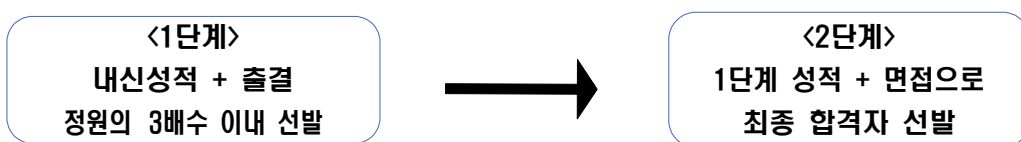
④ 사회통합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1단계 전형 요소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점수순으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60%를 1순위에서 선발(미달시 후순위에서 순위적용 선발)하고 나머지 40%는 순위와 상관없이 통합 선발한다.

⑤ 동점자 발생 시 1단계 점수, 자기주도학습영역, 인성영역 점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하며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학교장은 학칙과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전·편입학을 허가한다.

⑦ 재·전·편입학 시 전형료는 신입학전형의 전형료(1단계 5,000원, 2단계 25,000원)으로 한다.

⑧ 자기주도학습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1. 1단계 :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로 모집정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2. 2단계 : '1단계점수(160점) + 면접(40점)'으로 선발
 ※ 면접 = 자기주도학습전형 영역 + 인성 영역

내신 성적 반영 기준 및 출결 상황, 면접 점수

구분	산출방식																
내신 (160점)	전·편입학 전형일 기준 해당(최근) 학기까지의 고등학교 학기별 영어 과목 성적 내신성적의 환산점수 합/이수 학기 수 ※반영학기 최대 4학기(1-1학기 편입의 경우 해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영어성적) ※특례 및 일반귀국자의 경우 해외 고등학교 영어성적만을 반영 ※영어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 1개만을 반영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성적을 산출 표기																
	내신이 반영되는 학기 동안의 출결 상황 ▶ 출결 = -(미인정결석 일수×0.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인정결석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결석</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3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4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출결점수(감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d style="text-align: center;">0.4</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able> ※반영기준일 : 원서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전체학기				미인정결석일수	무결석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출결점수(감점)	0	0.1	0.2	0.3	0.4
미인정결석일수	무결석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출결점수(감점)	0	0.1	0.2	0.3	0.4	0.5											
면접 (40점)	자기주도학습영역(30점)			인성영역													
	지원동기	자기주도학습계획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10점	10점	10점	10점													

지원 자격별 내신성적 환산 방법

등급	국내고교 (석차백분율)	일반귀국자, 특례입학대상자 (외국학교 성적표)			환산 점수
		외국등급	5점 만점	100점 만점	
1	~ 4% 이하(4%)	A ⁰ ~ A ⁺	4.95 이상	99 이상	160.0
2	4% 초과 ~ 11% 이하(7%)	A ⁻	4.85 이상 ~ 4.95 미만	97 이상 ~ 99 미만	153.6
3	11% 초과 ~ 23% 이하(12%)	B ⁰ ~ B ⁺	4.70 이상 ~ 4.85 미만	94 이상 ~ 97 미만	142.4
4	23% 초과 ~ 40% 이하(17%)	B ⁻	4.50 이상 ~ 4.70 미만	90 이상 ~ 94 미만	123.2
5	40% 초과 ~ 60% 이하(20%)	C ⁰ ~ C ⁺	4.25 이상 ~ 4.50 미만	85 이상 ~ 90 미만	96.0
6	60% 초과 ~ 77% 이하(17%)	C ⁻	3.95 이상 ~ 4.25 미만	79 이상 ~ 85 미만	64.0
7	77% 초과 ~ 89% 이하(12%)	D ⁰ ~ D ⁺	3.60 이상 ~ 3.95 미만	72 이상 ~ 79 미만	36.8
8	89% 초과 ~ 96% 이하(7%)	D ⁻	3.20 이상 ~ 3.60 미만	64 이상 ~ 72 미만	17.6
9	96% 초과 ~ 100% 이하(4%)	F	3.20 미만	64 미만	6.4

- ※ 위의 경우와 다른 성적표기 방식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 수치산출이 불가능한 외국학교 성적표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내 재학생 중 학기 중 전·편입 신청자(학기 이수가 미완료 되어 성적산출 불가)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단, 국내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전의 성적은 반영 불가)

제8조(학과 배정 방법) ① 학과 지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지망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원 외 모집정원

전형구분		학과					합 계
		영어과	러시아어과	일본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정원의 2%이내)	2	1		1		4
	국가유공자자녀 (정원의 3%이내)	2	2		2		6
	일반귀국자 (정원의 3%이내)	2	2		2		6

제9조(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재입학	1) 재입학원서 1부
일반학생 및 외국어고	1) 전·편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고등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4) 자기소개서 4부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회통합	1) 전·편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고등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4) 자기소개서 4부 5)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1부 6) 사회통합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확인서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8) 지원자격 및 제출 서류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전편입학-자료실’에 게시
특례 및 일반귀국자	1) 전·편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 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3) 자기소개서 4부 4)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제출(원본 지참 제시) ※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전편입학-자료실’에 게시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예방 접종 증명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대상자]	1) 전·편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고등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4) 자기소개서 4부 5)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제10조 (기타) ① 본교의 학생 정원 및 현원의 결원 변동 현황을 본교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민원인이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결원 발생 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충원한다.

③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편입학 등 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전형 성적순에 의거 보충한다.(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원재적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한다.)

⑤ 자기소개서에서 교내대회 수상 및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간접 기술 포함) 기재 시 영점 처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본교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한다.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요항 준용)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

⑥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거나 심사 제외 또는 불합격 처리한다.

<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간접적·우회적 진술 예시>
-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음”
-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음”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⑦ ‘보호자’라 함은 민법 제909조 친권자(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 부모 공동)를, ‘전 가족’이라 함은 친권자와 지원자를 포함한다.

⑧ ‘거주’라 함은 특정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되어 입국(Arrival)한 날까지로 한다.

⑨ ‘체류’라 함은 거주기간 내에 당해 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한다.

⑩ ‘재학기간’이라 함은 거주 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으로 1년간 이수학기는 2개 학기 기준을 의미한다.(외국학교에서 1년 이내 3개 학기 이수는 우리나라의 2개 학기 이수로, 1년 이내 4개 학기 이수도 우리나라의 2개 학기로 간주한다.)

⑪ 기타 전·편입 전형과 관련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록> 특례전형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외국인(제2호다목)		일 반 귀국자	비 고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학년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 최종학교 재학 (제적, 졸업)증명서	(○)	(○)				(○)	최종 재학 년월일과 최종 재학 학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	○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주민등록등본	(○) (부·모·학생)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 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 요원의 정부 초청 또 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학생)	○ (학생)		출입국관리 사무소, 동주민센터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장 발행
학력보증서			○				해당 행정구청장 발행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서식1>

고등학교 재입학 원서

지 원 자	전재적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제적시 학 년	제 학년 반 과		
	성 명			주민등 록번호	-		
	재적기간	년 월 일 입학 년 월 일까지 재학				성별	남·여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직 업			전화번호	집전화 :	휴대폰 :	
	주 소						
희망 학교	재입학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제 학년	과		
<p>위의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p> <p>2021년 월 일</p> <p>수 원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직인)</p>							
<p>위와 같이 재입학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지원자 : 인(또는 서명)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보호자 : 인(또는 서명) </p> <p>수 원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 귀하</p>							

<서식2>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전·편입학 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성별		수험번호
※									
지원구분	1학년	2학년	일반 학생	사회통합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대상	일반 귀국가	연 락 처	집전화
	해당 사항에 ○표시할 것								정원내
지망학과			영어과	러시아어과	일본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보호자 휴대폰
해당 사항에 ○표시할 것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전화번호	현주소		(우 -)						
전·편입학 지원서	상기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 인(또는 서명) 보호자 : 인(또는 서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사진(3×4)	
학교장 확인서	※국내 고교 재학생으로 본교에 전입학 응시할 경우에만 작성 상기 학생이 귀교 전입학 전형에 지원함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차르는 선 > -----

전(편)입학 수험표 (접수증)

							수험번호	※	
								접수자 확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지원구분	1학년	2학년	일반 학생	사회통합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대상	일반 귀국가	사 진 (3×4)	
	해당 사항에 ○표시할 것								정원내
지망학과			영어과	러시아어과	일본어과	프랑스어과	중국어과		
해당 사항에 ○표시할 것									

※ 전형일시의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2021년 월 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서식 3>

수원외국어고등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전편입 전형
자기소개서

* 수험번호	
* 접수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성명	_____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출신중학교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중학교 졸업예정/졸업	_____	검정고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지구합격
연락처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지원학과	_____				

2021년 _____ 월 _____ 일

지원자 _____ (인)/서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기주도 학습과정, 학교 특성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진로계획 등을 기술하십시오.
-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기재시 감점 및 0점 처리됨)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입학원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십시오.
5.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묶어 주십시오.
6.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수험번호	
------	--

□ 나의 꿈과 끼, 인성 (1,500자 이내)

-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학교 특성과 연계해 지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 본인의 인성(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 · 외 각종 수상 및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자격증 취득 사항,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간접 기술 포함)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3페이지>

수험번호	
------	--

〈서식 4〉 **사회통합 전형 _ 학부모 및 학교장확인서**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발급번호	2021 -
------	--------

접수번호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	(가) -*****
			학부모		(나) -*****
출신 학교	() 고등학교 ()학년 재학				
사회통합 전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2순위	유형 (), 소득분위 ()			
	3순위	유형 (), 소득분위 ()			
<p>본인은 2021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의 ()순위 ()유형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 학 생 _____ (인)/서명 학부모 _____ (인)/서명</p>					

() 학 교 장 (직인)

- ※ 발급 번호 : 해당 고등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록(발급대장 별도)
- ※ 접수 번호 : 사회통합 전형 접수 번호 기록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록)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표기
- ※ 지원 유형
 - 1순위 : () 안에 유형 기입
 - 2,3순위 : () 안에 유형 및 분위(건강보험료 기준)를 기입

<서식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고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 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6>

외국 학교에서의 수학 사항

학 교 명	소재국 ----- 도시	이수 학년 (1~9)	입 학 년월일	전학(졸업) 년월일	재학기간 (년,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외국학교 총 재학 학기 (국내 학기 기준) : ()학기					

※ 외국의 초·중·고에서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하고 학교명은 공식 영문 명칭을 영어로 기재

<서식7>

체 류 상 황

■ 지원자 (성명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 부 (성명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 모 (성명 :)

국외 거주(체류)국	체 류 기 간						체류일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계							()일

<서식 8>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 명 : (한자 : 영문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성별 :

위 학생은 재()동포 부(), 모()의 자녀로서 모국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신 청 인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년 월 일

확인자 ()동 ()통장 성 명 (인)

()동 ()통 ()반장 성 명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가해 학생 전학 학교 배정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학사유				특수교육 대상자여부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						
보호자	성명			휴대폰 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소속교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번지수까지 상세히 기재)				
지방정보	지역명 지방 학교	지역명 지방 학교		지역명 지방 학교		지역명 지방 학교	
	○○○지역명 ○○○고등학교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인문고 주간부, 야간부(과, 계열)(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 사립고)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우편번호 □□□-□□□ □(도) □(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및 동 시행령 제20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귀 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1	학교명	○○○○학교		2	보고 일시 (위원회개최일)		
3	관련 학생	성명	△△△	학년 / 반	2 / 1	성별	남 / 여
		성명	○○○	학년 / 반	2 / 5	성별	남 / 여
4	사안유형	신체폭력(금품갈취, 따돌림) - 주 사안을 적고 ()안에 추가 사안 기록					
5	사안 내용 (간단히)	누가	○○○가 △△△에게				
		언제	2021년 월 일 요일 00:00~00:00				
		어디서	○○학교 3층 동편 남자 화장실(구체적인 장소 기재)				
		무엇을/ 어떻게	4월 3일(화) 3교시 후 화장실에서 ○○○와 △△△가 서로 장난을 하다 ○○○가 △△△의 등을 먼저 1대 때렸고, 이에 △△△가 발로 ○○○의 얼굴과 다리를 5~6차례 폭행함				
		왜	서로 별명을 부르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6	학생상태	피해학생(신체적·정신적) ○○○- 왼쪽 눈가 부분이 찢어져 10바늘 치료함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함					
		가해학생(신체적·정신적) △△△- 얼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	조치	피해 학생	지속적인 관찰과 심리상담 실시				
		가해 학생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6시간 조치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 조치) ※ 서면사과, 특별교육, 퇴학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				
8	사후계획	피해 학생	피해학생이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해 학생	보복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실시				
9	참고사항	법적인 소송 없고 가·피해학생 학부모간 합의서 작성					
10	작성자	성명	(학교폭력책임교사)				
11	보고자	성명	(교장)				